| 의안번호 | 제 12 | 29 호 |
|-------|-----------|------|
| 의 결 | 2015년 | 면이 |
| 연 월 일 | (제 338 회) | |

충청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

| 제 출 자 | 충청북도지사 | |
|-------|--------------|--|
| 제출연월일 | 2015년 2월 23일 | |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

의 안 번 호 129

제출연월일: 2015년 2월 23일 제 출 자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○ 보유 건설기계의 감소로 민간임대와 도급공사 시행이 어렵고 자체 정비공장의 폐지 등에 따라, 주요 규정의 적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기능을 상실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「충청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」를 폐지 함.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ㆍ구조문 대비표 : 해당 없음

5. 관계법령 발췌 : 해당 없음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